

자동차 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및 통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

『자동차관리법』 제43조제1항 제2호(정기검사) 및 제43조의2 제1항(종합검사)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15호의4·15호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(과태료 부과),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17조(과태료부과)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및 통합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,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6. 6. 18. ~ 2026. 7. 6. 까지
2. 공고대상 : 붙임내역 참조
3. 공고내용 : 자동차 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및 통합고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
4. 공고사항
 - 가.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 - 나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,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 - 다.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되며,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
5. 문 의 처 : 인천광역시 서구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(☎032-560-4882)

2026년 6월 18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